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전통놀이의 '현대화'

전북도, 연구·보급 위해 전문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전북도는 도내 희망 시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통놀이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전통놀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도는 2019년 현재, 남원, 임실, 순창, 고창, 부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통놀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에 특화된 전통놀이를 육성하는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진안, 순창, 고창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통콘텐츠 활용 및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도가 지원하는 전통놀이 사업은 문체부가 '2016년 전통놀이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한

이래로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전통놀이를 정책적인 사업대상으로 삼은 선구적인 사례로서, 전북이 전통놀이 대중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각 시군에서 발굴한 지역특화 전통놀이를 2016년에는 4개 시군에서 총 76회 진행, 2800여명이 체험했고, 2017년에는 5개 시군에서 총 123회 진행, 7300여명이 체험했으며, 2018년에는 5개 시군에서 총 134회 진행, 8400여명이 체험했다.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각 시군에서 운영한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2017년에는 1개 시군에

서 25명이 수강, 24명이 전문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2018년 4개 시군에서 105명이 수강, 89명이 전문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도는 더욱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가 일상에서 전통놀이를 향유하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군을 적극 독려·안내하여 2020년에는 전통놀이 사업 지원규모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공장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앞장서는 전북은 무형문화재로서의 전통놀이 인식을 제고하였고 전통놀이 체험 1번지의 위상을 선점했다.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를 현대적이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시군의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이후 농산물 부적합 감소

정부는 올해 상반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됐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 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견과조실류 등에 우선 도입해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농산물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2019년 상반기 국내 농산물 부적합률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했고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에 비해 0.3%p 감소했다.

이는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 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등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p 증가(0.7%→1.0%)했고 바질 등 허브류에 부적합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는 하반기 안정적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 상담, 설명회 등을 추진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농약의 추가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동시분석 검사항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적합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교육·상담을 강화하고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상담창구와 농업인 단체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수입 농산물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체별 무료 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등록 수요가 많은 소면적 작물용, 제조제 등 농약을 상반기 1000여개 등록 추가했고 내년 초까지 4000여개로 늘릴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 시청각 장애인용 TV 추가보급 접수

전북도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미디어재단과 함께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추가 보급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보급사업 대상은 보건복지부 등록 시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7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맺고 시청각장애인용 TV를 무료

로 보급해 왔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515대를 보급했다.

이번 사업 주관 기관인 시청자 미디어재단에서는 저소득층·장애정도·연령 등 우선 보급자격기준에 따라 재단 운영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시청각장애인용 TV 추가보급 대상자를 선정할 후, 올 하반기 중 전국적으로 7500여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정읍시 공고 제2019-940호

정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1.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가.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적용범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률		
폐지	4	광장	일반광장 100㎡이하 일원	경주시 부견동 광장	84,240	감(84,240)	-	2008.10.23 (정읍시 고시 제 2008-63호)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률		
변경	24	내장산 관광테마파크 (관광휴양형)	부견동 100㎡이하 일원	91,782	감(952)	90,830	2016.8.26 (정읍시 고시 제 2016-63호)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계제생택(열람장소에 비치)

- 1)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2. 관련도서: '실용생택'(정읍시 도시계획과에 비치)

3. 열람기간: 신문개제 다음날로부터 14일간(신문개제일: 2019. 7. 19.)

4. 열람장소: 정읍시청 도시계획과

5. 의견제출: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도시계획과 ☎ 063-539-5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본 열람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19일 정읍 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

제왕적 국회법 폐지하라!

일시: 2019.7.17. / 장소: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실 / 국민주권실천시민운동연합,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인권선교협회, '제왕적 국회법 철폐하라' 주장

전북인권선교협의회 및 국민주권실천시민운동연합은 국회의원의 세비 반납을 촉구했다.

돼지에게 남은음식물 직접 처리 급여 금지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돼지 포함)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7월 25일경 개정·공포(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 하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하여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하여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별지 제24호) 또는 신고서(별지 26호)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허용하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용자 100%, 연리 1.8%)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의 남은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를 환경부 심층구 사무관(044-201-7410)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순석 서기관(044-201-2537)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윤성 기자

전북·중국 청소년 국제교류 참가자 23일까지 모집

전북도와 전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협회장 김경희)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운영되는 2019년 전북·중국(상해) 청소년 국제교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공고기간은 7월 10일부터 23일까지이며, 접수기간은 7월 18일 9시부터 23일 18시까지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로 할 수 있고, 제출처는 전라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이다.

기관당 1명의 청소년 추천이 가능하며, 접수순에 따라 30명까지 접수를 받아 면접을 통해 최종 1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목재 이용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취약계층 안정 도모

전북도, 나눔숲 조성사업 공모 접수

전북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2020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모사업 분야는 복지시설나눔숲(실외, 실내), 무장애나눔숲 조성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복지시설나눔숲(실외), 무장애나눔숲 조성사업과 시설에서 진흥원에 직접 접수하여 심사를 받는 복지시설나눔숲(실내)사업으로 구성된다.

복지시설나눔숲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내에 수목식재 등을 통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복지시설나눔숲(실내)은 사회복지시설내의 바다·벽면에 목재를 이용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이용자의 거주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무장애나눔숲 조성은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 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재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응모하도록 하고 있다. 나눔숲(실내·외) 지원 규모는 1억원내외의 최대 2억원까지로 시도별로 10개소 이내로 하고 있고, 나눔숲은 8억원내외의 최대 20억원까지로 3개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도는 나눔숲(실외)과 나눔숲 조성 신청접수를 오는 7월 26까지 받아 자체심사를 할 예정이다. 선정된 곳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 보장 및 현지심사 대비 컨설팅을 실시하여 중앙심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